

#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그 재산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상속세는 상속개시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고, 증여세는 생존 중에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것이 다를 뿐, 재산의 무상이전을 그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재산세 내지 유통세의 일종으로 설명한다.

글 \_ 정태화 세무사



### 1.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히 부담하라.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어느 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 배 몇 십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아들(25세)에게 1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3천만원을 공제한 7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10% 이므로 700만원이 세금이 되며, 이 금액을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주므로 내야할 세금은 630만원이 된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50억원 가량 되고 위 부동산가액이 5억원이라면 상속세는 50%의 세



율이 적용되어 위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하더라도 2억5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세금부담이 약 40배 정도 늘어난다.

위 사례는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현재의 1억원이 20년 후에 얼마로 늘어날 지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의 세율이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왔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상속세는 크게 줄어 들 것이다.

하지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적어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럴 때에는 증여세 면세점인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이하로 증여하면 된다.

이와 같이 사전에 증여하면 장래의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계획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즐거운 마음으로 납부해도 된다.

## 2.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겨라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 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여 집을 장만할 때 쓰라고 아들 명의로 1,600만원을 저축하였는데, 15년 후에 위 금액이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저축당시 아버지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세 10만원까지 납부하였다면 15년 후에 아들이 위 저축액 7,000만원을 찾아서 집을 장만하는데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관서에서는 아들 명의로 저축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 보아 아들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7,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러면 4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다. 그러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특히 법인의 주식을 2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를 작성·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명부 내용과 실지 주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 명의신탁 해 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당해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2004년부터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미성년자가 주식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